

CTV 빌딩 붕괴 사고 수사 결과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CTV 빌딩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인 수사였으며, 뉴질랜드 경찰 수사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되었고 어려웠던 사건의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 활동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다양한 공학적 자문을 구하고 이 빌딩의 특정 구조물을 다시 만들어 테스트해 보는 한편, CTV 현장을 굴착하고 크라이스트처치 공소 담당 변호사와 뉴질랜드 정부 법무자문처의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참고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찰은 법률 자문과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용 정보를 앞에 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실망스러우리라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무자문처, 크라이스트처치 공소 담당 변호사가 12월에 유가족들과 만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더 설명 드리고 질문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설명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이 서한의 말미에 나옵니다.

수사를 통해 CTV 빌딩 설계에 중요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저희 경찰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른 모든 소추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에도 법무자문처 형사소추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론은 법무자문처 형사소추 지침에서 정한 요건인 합리적 수준의 유죄평결 가능성을 기대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피의자들의 행위 시점과 희생자들의 사망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 공백이 있다는 점과 관련해 법률상의 기술적 장애가 노출되었습니다. 이 또한 형사소추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입니다.

법무자문처는 이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의견 요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의 불소추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에 법무자문처의 의견 중 일부를 옮겼습니다.

법무자문처 의견 – 작성자: Brendan Horsley, 법무자문처 차장(형법)

"형사소추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거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는 경찰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할 공소 담당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자문처와도 협의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2017년 5월 26일,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크라이스트처치 공소 담당 변호사 Mark Zarifeh 씨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또 법무자문처 차장(형법)이 Zarifeh 변호사의 의견을 재차 검토했습니다.

형사소추 결정은 법무자문처 형사소추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지침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i)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가 합리적 수준의 유죄평결

가능성을 기대할 만큼 충분해야 하고('증거 충분성'), (ii) 형사소추가 공익을 위해 필요해야 한다.

경찰 수사 팀은 CTV 빌딩의 설계 책임 엔지니어였던 Alan REAY 박사와 David Harding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CTV 빌딩 설계에서 여러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 Beca로부터 종합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Beca 보고서는 두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인 피어 리뷰(peer review)를 받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과실치사는 비난할 만한 심리상태(blameworthy state of mind)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중범죄 구성 일반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과실이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태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울였을 주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 이탈'이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입니다. 형사소추 피고인의 행위가 중범죄 유죄 평결을 내릴 만큼 심각했다고 배심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실이 해당 사망 사고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초래했다는 것도 입증해야만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 같은 극단적 사태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 담당 변호사와 법무자문처 차장은 이 사건이 '증거 충분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애매하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대 이탈'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쪽도 성공적인 형사소추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소 담당 변호사는 유보적인 마음이 일부 있지만 Beca의 의견에 많이 의존해 증거 충분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자문처 차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보수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Beca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이 사건이 '전문가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우리가 피고인 측이 펼칠 예상 항변 논리는 물론, 기타 다른 증거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형사소추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형사소추 상의 핵심적 어려움은 드러난 설계 오류가 없었더라면 CTV 빌딩이 붕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피어 리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추의 기술적 장애도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행위가 중지된 후 '1년 1일'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해야 합니다. '1년 1일' 규칙은 그간 법원에서 많이 고려하던 심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자문처 차장은 이것이 형사소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사건 해석에 따르면 이 과실행위는 설계 작업이 마무리된 1986년에 중지되었습니다. 1년 1일 규칙은 역사적 변칙으로서, 현재 법률 개혁 검토 대상의 하나로 올라 있습니다."

끝

(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찰은 법률적 의견과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포함한 많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문서는 뉴질랜드 경찰청 웹사이트 www.police.govt.nz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실망스러우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어 온 문제들이 매우 어렵고 애매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받은 법률적 조언과 전문가 의견이 변화해 온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 사고로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경찰 팀이 수사 기간 전체를 통틀어 쉬지 않고 열심히 수사에 임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는 반드시 수집 증거와 준수 요건에 입각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원이 결정해 주도록 맡겨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뉴질랜드 사법행정 규정에 따르면 수집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 수준의 유죄평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추를 하게 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은 법원에 기소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됩니다.

CTV 빌딩 붕괴에 대한 정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지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시리라는 점을 잘 압니다. 결국 CTV 빌딩의 붕괴로 이어진 문제점들을 정부 조사위원회가 상세하고 철저히 조사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와 정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 자체는 경찰 수사로 얻은 추가 정보를 감안하더라도 형사소추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옵션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5명의 CTV 빌딩 인명 피해가 뉴질랜드에서 발생했고, 그래서 오직 뉴질랜드 법률에 의거해서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CTV 빌딩 붕괴 사고로 사랑하는 분을 잃은 모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Peter Read

수사 국장

Peter.Read@police.govt.nz

유가족 설명회:

경찰과 법무자문처, 크라이스트처치 공소 담당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더 논의하고 질문에 답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시: 12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Avonhead Baptist Church
102 Avonhead Road
Avonhead
Christchurch